

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2001. 11. 10.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1년 10월 24일
- 회부일자 : 2001년 10월 25일

다. 상정일자 : 제1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- 2001. 11. 8 :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소방본부장 이 범 진)

가. 제안이유

- 사회가 다변화, 복잡화함에 따라 이에 대처할 의용소방대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,

-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령으로 인한 현장출동에서의 활동이 어려워 정년제도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차등제로 하는 한편 대장 등에 대한 임기제한을 폐지하여 조직을 활성화 하며,
- 소방관이 부족한 농촌지역에서는 화재취약 시기에 소방관서에 근무 조치할 수 있는 근거마련 및 재해보상금을 현실화하여 재해 발생시 대원들의 재해에 맞는 가료를 함으로써 대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추상적 임용기준 삭제 및 대원의 정년제도 도입
 - 임용기준에 있어서 “관할 구역내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민” 규정 삭제
 - 대원의 정년제도 도입
 - 도시지역 : 간부 60세 이하, 대원 58세 이하
 - 농촌지역 : 간부 65세 이하, 대원 63세 이하
- 기술지원 업무의 강화
 - 화재의 다양화, 복잡화에 따른 기능보유자 활용을 위한 기술인력을 확보토록 함.
- 대장의 연임제한 폐지와 지역대장 및 부대장, 부장, 반장의 임기제 도입
 - 정년제 도입으로 인한 연임제한 폐지 및 부대장, 부장, 반장의 임기제 도입으로 대원의 활력소 제공

- 대원의 해임 권한 강화
→ 교육, 훈련에 연4회 이상 불참시 해임하도록 함
- 복무의무 다양화
→ 소방관 인력부족 농촌지역의 소방출장소에 의용소방대원이 보조근무 할 수 있도록 소방서장 또는 군수의 근무명령 강화함.
- 재해보상비의 현실화
→ 요양보상, 장애보상, 장제보상, 유족보상의 현실화 및 장애 등급과 지급기준을 현실화 함.

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 상 혁)

-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사회의 다변화와 노령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년제도 도입과 화재 취약시기에 농촌지역의 소방관서에 근무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의용 소방대원의 재해보상금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- 본 개정 조례안 중
의용소방대 업무분장사무 중 (별지 제3호) 기술지원반 업무의 새로운 소방기술보급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과 기술인력 확보 방법,

화재 취약시기 및 경계 근무기간에 소방파출소에 의용 소방대원이 보조 할 수 있도록 소방서장 또는 군수의 근무명령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

근무 명령권의 근거 및 명령 불 이행시 조치방법, 대기근무명령에 따른 수당의 구체적 지급기준,

재해보상비 현실화에 따른 재원 확보 계획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의회소방대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